

[정오표] 제1판 지식재산능력시험

※ 정오 사항은 [초판: 2025. 1. 31.] 발행 도서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전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일괄 수정 사항	특허청	지식재산처
		외국 특허청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상대국 특허청	상대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각국 특허청	각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p.13	01 지식재산의 가치와 의의	발명,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이 2011년 5월 19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3조 정의의 1항과 3항에서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설명하고 있다.	발명,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이 2011년 5월 19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3조 정의의 제1호와 제3호에서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설명하고 있다.
p.16	(1) 특허권	한편, 「특허법」 제89조는 허가 등으로 인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나 심사 등이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89조, 제92조의2는 허가 등으로 인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나 심사 등이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관련 조항과 내용을 다음과 같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관련 조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p.18	3. 저작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 동안 지속되므로 저작물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와 통제가 보장된다(저작권법 제39조). 저작인접권의 지속 기간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연, 녹음 또는 방송일로부터 50년 동안 연장된다(저작권법 제 86조).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 동안 지속되므로 저작물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와 통제가 보장된다(저작권법 제39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음반은 70년, 방송은 50년이다(저작권법 제86조 제2항).
	4. 신지식재산권	(1)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모든 기술 또는 사업 정보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영업정보 등 공개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핵심은 비밀 유지,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다.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모든 기술 또는 사업 정보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핵심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될 것)이다.
p.19	첫 번째 문단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점은 영업비밀은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특허는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허는 부여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대중에게 발명을 자세히 설명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은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한 잠재적으로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존속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 도메인이 된다.	영업비밀과 산업재산권의 차이점은 영업비밀은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특허는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산업재산권은 부여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대중에게 발명을 자세히 설명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은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한 잠재적으로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존속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공공의 영역이 된다.
p.27	1. 특허법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품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2.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의 목적은 사소한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제 적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실용신안법」의 목적은 사소한 발명인 고안을 보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제 적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p.35	3. 특허권으로 보호	발명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모두 특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발명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모두 특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p.39	01 지식재산 경영이란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정의는 ‘지식재산경영인증 운영 요령(특허청 고시 제2022-19호)’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정의는 ‘지식재산경영인증 운영 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p.73	참고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④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강화: 2024년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아이디어 탈취 행위 및 특허권 침해행위(이하 ‘기술탈취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④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 삭제

		해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 법률 제20321호, 특허법 법률 제20322호). 종전 법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더 강화하였다. 이는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p.121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p.131	**(2)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이고, 최대 4개월까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최장 6개월), 4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서를 바탕으로 심사관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4개월이고, 최대 4개월까지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최장 6개월), 4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서를 바탕으로 심사관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141	**1. 시간적 효력 범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56)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56)
p.142	**① 물건발명**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p.144	**② 수출**	속지주의 원칙상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은 실시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을 위한 전제행위로서의 국내에서의 생산.사용.양도행위 등은 특	'수출'이란 국내에서 외국에 물건 등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수출을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로 보지 않았으나, 2025. 7. 22.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20700호, 2025. 1. 21. 일부개정)에서는 ⅰ) 특허

		허권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수출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침해 물품이 국경을 통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ⅱ)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 수출을 실시(사용)행위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에서도 수출을 실시행위로 보고 있어서 관련 법률, 외국 입법례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을 물건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행위에 포함하였다.
p.177	**2.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이 짧음**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빠른 유행성을 갖으며,	품에 구현된 디자인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빠른 유행성을 가지며,
p.196	**2. 디자인 도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 창작물의 형태 전체가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정해진 방법에 따라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디자인 도면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 이미지 또는 사진 이미지를 삽입해야 하고,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을 기재하여야 한다.8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 창작물의 형태 전체가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정해진 방법에 따라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디자인 도면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 이미지 또는 사진 이미지를 삽입해야 하고,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8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 도면】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1】 【도면 2】	【디자인 도면】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도면 1】 【도면 2】
p.199	**⑬ 아래에 추가**		⑭ 디자인 창작의 내용에 관한 설명 공지된 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창적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 예이 디자인은 기존의 단순한 원통형 조명과 달리, 물결 형태의 곡선을 상단에 적용하여 자연의 흐름을 연상시키고, 조명 조절 스위치를 곡선 내부에 숨겨 미려한 일체감을 구현한 점이 독창적임 예이 디자인은 기존 의자의 일자형 다리구조에서 벗어나, 나무뿌리의 유기적 곡선을 모티브로 한 비대칭 다리를 적용하여 자연미와 조형미를 동시에 표현한 것임

	(4)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 작성방법	⑷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 작성방법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은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적고,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다. 또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고, 300자 이내로 작성한다.	삭제
p.200	**예시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		삭제
p.207	**(2) 부분디자인의 출원서와 도면**	부분디자인은 일반적인 전체디자인과 다르기 때문에 출원서의 '부분디자인 여부'란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삭제
p.208	**②**	②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로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93)	②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93)
p.241	**(2) 인정요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이어야 한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이어야 한다.
p.262	**5.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아래에 추가**		6. 출원시 특례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③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④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출품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품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박람회의 권위를 보호하고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권리자에게 상표등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품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증명서류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시 특례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p.263	**2. 상표등록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129)에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129)에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table>
<tr><td></td><td>이의신청 기간 및
증거보정기간</td><td>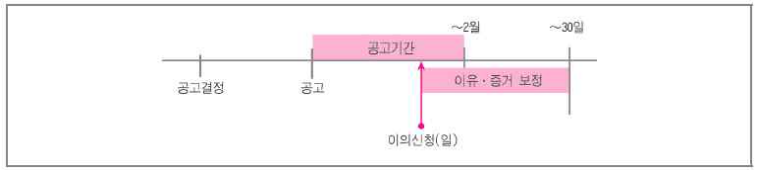
</td><td>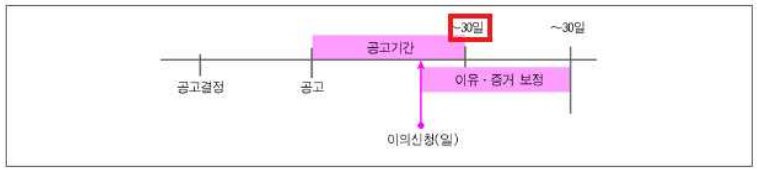
</td></tr>
<tr><td>p.393</td><td>2. 직무발명 보상 절차</td><td>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 없이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다만 예약승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종업원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td><td>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 없이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2조).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한편 예약승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종업원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td></tr>
<tr><td>p.394</td><td>3. 직무발명 보상 분쟁</td><td>3. 직무발명 보상 분쟁
<table>
<tr><td rowspan="2">사용자의 권리</td><td>대가 없는 통상실시권 취득</td><td>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제3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대가 없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여 그 직무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음</td></tr>
<tr><td>예약승계</td><td>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해서 유효함</td></tr>
<tr><td rowspan="2">사용자의 의무</td><td>승계 여부 통지의무</td><td>예약승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td></tr>
<tr><td>정당한 보상을 해줄 의무</td><td>• 예약승계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정당한 보상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td></tr>
</table></td><td><table>
<tr><td rowspan="2">사용자의 권리</td><td>대가 없는 통상실시권 취득</td><td>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제3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대가 없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여 그 직무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음</td></tr>
<tr><td>예약승계</td><td>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해서 유효함</td></tr>
<tr><td rowspan="2">사용자의 의무</td><td>승계 여부 통지의무</td><td>예약승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주장을 할 수 없음</td></tr>
<tr><td>정당한 보상을 해줄</td><td>• 예약승계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td></tr>
</table></td></tr>
</table>

		<table><tr><td></td><td></td><td>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여야 함</td></tr></table>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법인과 연구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table><tr><td></td><td>의무</td><td>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정당한 보상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여야 함</td></tr></table> 3. 직무발명 보상 분쟁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법인과 연구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p.395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포상금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포상금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p.396		1. 처분수입금이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3. 처분수입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보상은 「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직무발명의 보상 과정에서 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등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제도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을 추진하기도 하며, 기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삭제
p.399	**관련조문**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

		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p.401	**02 직무발명의 신고**	사용자는 종업원의 발명 완성사실통지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는 종업원등의 발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발명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p.408	**제6조, 제7조**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결정 또는 개인발명 결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 또는 불승계결정에 관하여 해당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그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종업원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즉시 그 통지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 사본을 통지한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양도증 2부를 작성하여 날인이나 서명한 후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양도증의 수령 즉시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이나 서명한 후 그중 1부를 제출한 종업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시점 및 포기간주 등)**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불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③, ④ 삭제 **제7조(승계시점 및 포기간주 등)**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결정 또는 개인발명결정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시 제5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때 사용자 및 종업원등은 별지4호 서식의 양도증 2부를 작성하여 날인이나 서명한 후 사용자 및 종업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승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제5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승계 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table>
<tr><td></td><td></td><td>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불승계결정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td><td></td></tr>
<tr><td>p.417</td><td>[별지 제3호 서식]</td><td><table><tr><td colspan="2">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td></tr><tr><td>접수번호</td><td></td></tr><tr><td>수신(발명자)</td><td></td></tr><tr><td>발명의 명칭</td><td></td></tr><tr><td colspan="2">○○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승계 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td></tr><tr><td colspan="2">결 정 사 항</td></tr><tr><td>1. 직무발명 여부</td><td></td></tr><tr><td>2. 회사의 승계 여부</td><td></td></tr></table></td><td><table><tr><td colspan="2">불승계 결정 통지서</td></tr><tr><td>접수번호</td><td></td></tr><tr><td>수신(발명자)</td><td></td></tr><tr><td>발명의 명칭</td><td></td></tr><tr><td colspan="2">○○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불승계 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td></tr><tr><td colspan="2">결 정 사 항</td></tr><tr><td>1. 직무발명 여부</td><td></td></tr><tr><td>2. 불승계 결정 사유</td><td></td></tr></table></td></tr>
<tr><td>p.438</td><td>2. 경고장 수령</td><td>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td><td>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td></tr>
<tr><td>p.450</td><td>(5) 회피설계 시도</td><td>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td><td>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최대 5배, 미국에서는 최대 3배(treble damages)까지 증가할 수 있다.</td></tr>
<tr><td>p.467</td><td>(7) 행정적 구제절차</td><td>대표적인 조정 기관으로는 특허청 산하의 산업재산권 조정위원회가 있다.</td><td>대표적인 조정 기관으로는 지식재산처 산하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td></tr>
</table>

p.535	**01 특허심판의 종류**	이 제도에서는 누구든지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 사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 사유를 제기할 수 있다.
p.540	**특허법과 관련된 심판의 종류**	